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바로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5

2015-5호

- **의정·입법칼럼**
  - 최민수 교수 "장록 속 조례를 아십니까?"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도권 대토론회 개최 등 7건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등 6건
- **최근 기초의회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 5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5건
- **대법원 판례 정보**
  -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 등 3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의정 · 입법칼럼

▶ 최민수 교수 “장록 속 조례를 아십니까?” (5)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도권 대토론회 개최(공통) (9)
▶ 전국시도의회운영協, 5 · 18 기념곡 지정 촉구(공통) (11)
▶ 전국 14개 시 · 도지사, 지방대 수도권 이전 제한 촉구(공통) (12)
▶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 기본조례(부산광역시의회) (14)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촉구 건의안 채택(대전광역시의회) (16)
▶ 학생인권조례 적법(전라북도의회) (18)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만행 규탄(경기도 의회) (20)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22)
▶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4)
▶ 광주광역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 (26)
▶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27)
▶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지원 조례 (29)
▶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31)

최근 기초의회 제 · 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34)
▶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36)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38)
▶ 경기도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39)
▶ 충청북도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지원 조례 (40)

최근 제 · 개정 법령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43)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44)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46)
▶ 지방재정법 (47)
▶ 관광진흥법 (48)

대법원 판례 정보

▶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 (50)
▶ 정치자금법 위반 판례 (52)
▶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의 소 판례 (53)

의정 · 입법칼럼

최 민 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Ö ž

- 성 명 : 최민수(崔旼洙)
- 생년월일 : ‘58년 6월 27일 (충남 청양)
- 소 속 :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02-2633-0627, 010-5206-1556)

경 력

o 입법고등고시 5회 합격(1981년, 행정사무관 임명)
o 국회사무처 의사국 본회의 담당(1983)
o 국회 상공자원위 / 동력자원위원회 등 입법조사관(1991,서기관)
o 국회사무처 총무과장(1996, 부이사관)
o 미국조오지 메이슨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 파견(2년)
o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광위원회 전문위원(2002, 이사관)
o 국회사무처 연수국장(2003)
o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장(2007, 관리관)
o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2008)
o 국회 문방위원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09 -2012 차관보)
o 현,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o 충남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성남시의회 입법고문

학 력

• 충남대학교 법정대학(행정학과) / 국방대학원 국방관리학과 졸업
• 명지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저 서

- 지방의회운영(개정판 2014)
- 자치법규 길라잡이(개정판 2013), 지방예산결산(2015),
- 행정사무감사 기법&사례(공저,2012), 지방의회 의안심사(2006)
- 의정활동 손자병법 『상·하(2011), 도시지방행정론(공저,1998)
- 감사사례 분석& 벤치마킹(2004),
  지방의회론(주관식문제집)(1995) 등

<칼럼>

"장롱속조례를 아십니까?

최민수 교수 / 국회의정연수원

"장롱 속 조례"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장롱 속 면허"라는 말은 들어 보았지만, 장롱 속을 규율하는 조례가 있다는 말인가? "장롱 속 면허"는 운전면허를 따놓고도 실제로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운전면허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롱 속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지만, 시행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조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행기관에서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는다든가, 소요되는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 등을 말한다. 물론, 당초에 조례를 잘못 만들어 유명무실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조례 제정권은 지방의회에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였다면, 단체장은 일정한 사유(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가 없는 이상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개 두가지 이유이다. 조례 시행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행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단체장이 반대했거나 탐탁하지 않은 경우이다.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단체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단지, 의원은 조례 시행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장롱 속 조례"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먼저,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집행기관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례를 집행하고,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

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단체장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는 제정된 조례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입법취지대로 효과가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의 경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우리 지역과 도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면, 시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에서 어렵게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제정된 조례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조례의 제정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다.

지방의회가 1991년에 부활되어 의원들의 경륜이 쌓이고,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가 많아지고 있다. 일부는 다른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차용(借用)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는 비판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집행기관에서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 모범적인 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과 같다.

이제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 인지,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체크해야 할 것이다.

현행 조례는 법령 제. 개정이나. 지역 실정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개정될 때만이 의미가 있고 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도민에게 혼란을 주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유명무실한 조례가 없는지, 개정할 사항은 없는지, 통. 폐합 대상은 없는지 등 조례를 평가하고 정비할 때이다.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공통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도권 대토론회 개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수도권 대토론회 개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국시도의회의원들과 관계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강력한 주장과 제안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장대진)를 구성했다.

또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검토와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영남권(3.9), 호남제주권(3.27), 충청권(4.17) 토론회에 이어 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담고 있다.

장대진 특별위원회 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수도권 토론회는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를 종합 정리하는 대토론회로 지방자치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표출된 지방자치법개정안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중앙정치권과 연쇄 접촉하는 등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구 기자

공통

전국 시도의회 운영協 '임~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협의회는 광주시의회에서 제출한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와 정치권에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및 호남선 KTX요금 인하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30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35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온전한 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에서 제출한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건의안' 을 채택했다.

또 '호남선 KTX요금 인하 건의안' 을 채택하고 정부가 2005년 당시 약속했던 것처럼 분기역 변경으로 늘어난 요금만큼은 정부에서 부담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협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관련 부처 등에 보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배상현 기자 praxis@newsis.com

공통

전국 14개 시·도지사, 지방대 수도권 이전 제한 촉구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반드시 제한

전국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가 22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정당 등에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협조해달라는 서한문을 보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앞으로 대학 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돼 지방대학의 피폐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4.30)로 지역주민의 기대감이 크다“고 했다.

이어 “2006년 9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관련 규정은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확산하면 지방대학 주변 상권의 붕괴와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협의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반드시 제한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서한문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서명했다.

이성기 기자 sklee@newsis.com

부산광역시의회

〈주목! 이 조례〉 고령화사회 대비, 부산 노인복지 기본조례

노인 권익보호, 세대 간 이해 증진사업을 비롯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노인학대 예방 사업 추진, 고령친화도시 기준 수립과 고령친화도 평가, 고령화에 대응

노인층이 늘어나면 도시는 활력을 잃는다. 생산성은 낮아지고 반대로 복지 수요는 증가한다. 의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무엇보다 퇴직 후를 준비할 겨를 없이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은 자칫 빈곤으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대두된다.

부산이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정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는 49만8천546명으로 전체인구 356만 1천526명의 14%에 달한다.

유엔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고령사회로 진입한 곳은 부산이 처음이다. 전국 시·도 중에서는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충남, 충북에 이어 7번째다.

부산은 2003년 노인 인구 7%를 넘어서고서 12년 만인 지난 2월 말에 14%에 도달했다. 이런 추세면 2022년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건강한 노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인복지 조례가 '고령사회'에 접어든 부산에서 만들어졌다. 서울시에 이어 두번째다.

조례는 부산시가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부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게 제정 목적이다.

먼저 기본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각각 수립하되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를 시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위한 사업, 고용촉진과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한 사업 근거도 명시했다.

또 부산시는 고령자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공공시설 내 일상생활용품판매점 등에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도록 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노인 권익보호, 세대 간 이해 증진사업을 비롯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노인학대 예방 사업 추진, 고령친화도시 기준 수립과 고령친화도 평가, 고령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뒀다. 이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을 심의·의결할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노인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각각 마련했다.

박창수 기자 pcs@yna.co.kr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촉구 건의안 채택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안장과 추모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

대전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기식 의원(동구2)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 사이 대전 동구 산내동에서는 대전형무소 수용자와 보도연맹원 등이 군 헌병대와 경찰에 의해 대량 학살이 자행됐다"며 이 촉구건의안을 제안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07년 이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를 결정하고, 3개월 동안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민간인 희생자는 최소 1800명, 각종 기록에 의하면 최대 7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발굴 작업을 통해 확인된 유해는 단 34구에 불과했다.

윤기식 의원은 "매장 추정지역의 땅이 대부분 개인 소유이고 이미 상당 부분 파헤쳐져 이 일대에 매장된 유해는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한 채 땅속에 묻혀 있고 희생자 유족들은 지속적으로 유해 발굴 재개를 정부에 요구했

지만 수년째 아무런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의안은 △유해발굴 및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촉구하면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안장과 추모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국회의장 및 안전행정위원장, 각 정당 대표 등에게 보낼 계획이다.

이남춘 기자 snakorea.rc@gmail.com

전라북도의회

대법원 ‘학생인권조례 적법’, “학생인권 소중함 확인”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전북지역에서는 “학생 인권의 소중함을 법적으로 인정

대법원이 14일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전북지역에서는 “학생 인권의 소중함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환영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은 이날 교육부 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을 두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권조례는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였다. 조례를 공포한 전북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둘러싼 오래된 갈등을 종식시키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유발한 교육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대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은 그간 침해당한 학생 기본권의 보장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학생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내용과 방법 등이 지원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조례를 제정한 전북도의회는 ’인권조례의 대법원 승소 환영’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판결 승소를 환영하며 조례가 잘 정착돼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도록 교육관계자들이 학생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장,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만행 규탄”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과 의원들은 8일 도의회 현관에서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도의회는 이날 교과서 검정 결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결의 대회는 오완석 의원(수원9)의 사회로, 강득구 의장 인사, 송낙영 의원 규탄발언과 양당 수석대변인(안혜영・최호 의원)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강득구 의장은 “일본이 시행하는 역사교과서 왜곡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달 29일에는 송낙영(새정치, 남양주 3)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및 새누리당 도의원 59명이 발의한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고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처리될 예정이다.

박정규 기자 fob140@heraldcorp.com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1.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제정) 2015-05-26 조례 제 5505호

□ 주요목적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주요내용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유관 기관의 장, 군수·구청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물·토양·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물·토양·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 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
2. 사업장 관계자
3.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4.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관리교육 등)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노동관서·소방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자가 설치하는 화학물질관리 안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위해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5-20 조례 제 4732호

□ 주요목적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주요내용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현황
3.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
4.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보행불편 유발 요소
5. 보행환경 낙후지역 현황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지형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낙후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군수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구청장과 군수는 해당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를 위해 해당사업의 시행 전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 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7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의 범위나 규모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① 시장·구청장·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는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해당 도로구간 사업시행 전 관련 협의나 심의 등에서 해당 도로구간의 사업시행에 공공시설물등의 통합·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로·교통 관련 부서의 공무원
2. 대구지방경찰청 또는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시설관련 공무원
3.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등의 관리기관의 직원
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협의회에서 도로구간별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⑥ 해당 도로구간 사업시행자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해당 도로구간 사업의 실시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광주광역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

(제정) 2015-05-15 조례 제 4516호

□ 주요목적

재활용품 수거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

□ 주요내용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지원
4.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각 자치구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거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 사람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게 야광 조끼, 반사경 등 보호 용품 지급 및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인에게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조 체계 구축)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자치구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4.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제정) 2015-05-1 조례 제 3985호

□ 주요목적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

□ 주요내용

제3조(시책과 사업)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2.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 및 육성
3. 관광기념품의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지원
4. 관광기념품의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관광기념품 개발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6. 그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100선의 선정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2.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작품 전시회

②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선정작품은 일정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전시·관람하게 한다.

③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과 전시회 등의 절차는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심사위원회) ①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도의회 의원 및 당해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공모전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연도 출품작과 관련 있는 인사는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운영은 당해연도 심사에 한하며 공모전 심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제6조(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인증마크의 개발·사용)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작품의 영예를 높이고 판매촉진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인증마크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인증마크는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에 대한 권리는 도지사에게 있다.

제7조(인증마크 부착에 따른 생산자의 책무 및 선정 해제) ①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에 선정되어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생산자는 선정당시의 품질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관계공무원이 상품생산, 품질유지, 인증마크 사용실태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100선에 선정된 생산자가 품질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선 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작품 지원) 도지사는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선정작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의 전시 및 홍보지원
2. 선정작품의 상품화 지원
3.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4. 그밖에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2015-05-21 조례 제 3627호

□ 주요목적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친환경어업 기술의 개발·보급) 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어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어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어업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한다.

제7조(생산 및 유통지원)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어자재, 시설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어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어업 소득 보전 등) 도지사는 어업인이 친환경어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는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비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업소의 등에게 친환경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어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급식)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 2015-05-16 조례 제 1286호

□ 주요목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

□ 주요내용

제5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 확대)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7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에서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7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최근 기초의회 제 · 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2015-05-14 조례 제 1046호

□ 주요목적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

□ 주요내용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성북구 의회가 추천한 의원 2명
2.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
3.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관계관
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5. 청소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급식비를 포함한 필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2.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5-05-12 조례 제 1138호

□ 주요목적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주요내용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6. 주민조직의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방안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기관에 그 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과 지원 대상 · 규모 · 절차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 ①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5. 마을의 문화 · 예술 · 역사 보전
6.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 · 기관 지원
7.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
8.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과 자문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구 · 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 2015-05-15 조례 제 1082호

□ 주요목적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

□ 주요내용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경기도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2015-05-08 조례 제 3236호

□ 주요목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자 및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노인장기요양 A, B 등급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자부담 비용 전액과 그 밖의 대상자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은 1대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비율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지원 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후 성인용 보행기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등급 변경 등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대상) 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5. 충청북도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5-05-15 조례 제 2257호

□ 주요목적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들에게 방문 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혼자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공동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용시설을 갖춘 지역
2. 기타 의료보건지소 등 공용 시설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춘 지역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삭제<2015.5.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05.15)

1. 공동시설 개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
2.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난・재해에 대비한 보험료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보수, 보완사업비는 사업완료 후 지급 신청 일부터 30일 이내
2.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 분기 초 지급(개정 2015.05.15.)
3. 삭제 <2015.5.15.>

제7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시설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자・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48호 / 시행일 2015-05-28)

□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상공인의 업종 및 입지(立地)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6호, 2015. 1. 28. 공포, 5. 28.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시기를 정하고,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실적의 제출(제4조)

시·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제출시기를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제5조)

중소기업청장이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지역별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상권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환수 사유(제9조)

지출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경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183호 / 시행일 2015-04-07)

□ 개정이유

현행법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임차인은 다시 시설비를 투자하고 신용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하여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등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가검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에 관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항력, 권리금 등을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함(제2조제3항).

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4조).

다. 권리금을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함(제10조의3 신설).

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

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10조의4 신설).

마.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제10조의5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제10조의6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7 신설).

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8 신설).

자. 권리금의 보호대상에서 전대차를 제외함(제13조제1항).

차.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신설).

3.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23호 / 시행일 2015-05-04)

□ 개정이유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180호, 2015.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의 위탁절차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제16조)

1)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나.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제16조의2 신설)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다.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의 위탁절차 보완(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신설)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의 수행주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도록 함.

4. 지방재정법

(법률 제13283호 / 시행일 2015-11-14)

□ 개정이유

지방채의 발행요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이나 통상적인 재정수요를 초과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을 추가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제24조 전단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절차"를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의 제목 중 "공시"를 "공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공시"를 "공시 및 공개"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관광진흥법

(법률 제13300호 / 시행일 2015-08-19)

□ 개정이유

보험가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주도록 하고,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및 추가적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고,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와 유기시설 등의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또한,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여행자에게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주도록 함(제14조제2항).

나.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현장조사 결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다.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관광 관련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9 신설)

대법원 판례 정보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도1030 판결

【판시사항】

회계책임자 선임 전에 후보자가 예금계좌 신고 없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3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제2항, 제25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기 전까지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기 전에 예금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채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5. 6. 27. 실시된 양산군 의회 의원선거에서 경남 양산군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로서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전에는 후보자가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6. 11. 21:00경 같은 면 원리 소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선거사무원인 공소외 서삼덕에게 수당·실비 등의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교부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법 제125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전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는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의 규정에 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7조 제2항은 “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제1항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58조 제2항 제1호는 “정당·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가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123조 제1항은 “정당(대통령선거와 전국구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한다)는 후보자등록신청 후 지체 없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행할 회계책임자 1인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7조 제1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에는 즉시 당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소재지를 주된 영업지구로 하는 금융기관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예금주명·금융기관명·예금의 종류·예금계좌번호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기 전까지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기 전에 예금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채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각 규정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치자금법위반

광주고법 1999.9.16. 선고 99노3

【판시사항】

[1] 공직선거의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였으나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을 신청한 자가 지구당위원장인 국회의원에게 공천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으나 그 금원이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적인 부채변제 등에 제공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이유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정치자금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고 그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수된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를 제공받은 국회의원 등이 정당운영비, 선거관계비용 등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할 수 있는 것만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당초부터 그 금품이 뇌물로 수수되거나 사적 경비 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이외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로는 의율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을 신청한 자가 지구당위원장인 국회의원에게 공천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으나 그 금원이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적인 부채변제 등에 제공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이유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추38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이미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

[3] 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선군세자녀이상세대양육비등지원에관한조례안' 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감안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을 적극 장려토록 하여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사무이고, 또한 위 조례안에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3] 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선군세자녀이상세대양육비등지원에관한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MEMO

의 정 정 보

❖ 발 행 일 : 2015년 6월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연 락 처 : (041) 635-5121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